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42호 2023. 7. 6.(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942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1943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사천시 조례 제1944호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4
- 사천시 조례 제1945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6
- 사천시 조례 제1946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사천시 조례 제1947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사천시 조례 제1948호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12
- 사천시 조례 제1949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사천시 조례 제1950호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 사천시 조례 제1951호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37
- 사천시 조례 제1952호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40
- 사천시 조례 제1953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47
- 사천시 조례 제1954호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9
- 사천시 조례 제1955호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55
- 사천시 조례 제1956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사천시 조례 제1957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72
○ 사천시 조례 제1958호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74
○ 사천시 조례 제1959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7
○ 사천시 조례 제1960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82
○ 사천시 조례 제1961호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84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1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85
○ 사천시 고시 제2023-166호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86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968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0
○ 사천시 공고 제2023-969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9
○ 사천시 공고 제2023-977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108
○ 사천시 공고 제2023-983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10
○ 사천시 공고 제2023-984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0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7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2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명 당시에
재임(在任)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
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3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국내 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를 적용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4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2. "예비군"이란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사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5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시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를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
시의회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6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만 원이하 상품권”을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7. 6.>



직경 6.50cm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 7. 6.>

대한민국 성장의 날개!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 이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 천 시



수신
(경유)

제목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귀하(사)는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
년도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임을 증명합니다.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번 호		제 - 호	우대 및 지원기간	~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끝.

사 천 시 장 직 인

주무관

팀 장

과 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www.sacheon.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국민공개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7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을 “장애인[「지방세 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으로, “한다)이”를 “한다]이”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

제8조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8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사천시 사남면 방지로 70에 둔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근로자 공동식당 등
2. 문화시설: 키즈카페
3. 복지시설: 다목적실, 다목적홀, 프로젝트실, 커뮤니티실, 동아리실(중·소)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6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 승인 신청서를, 이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용 승인 절차는 이용료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면제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감경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 승인 취소신청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대장 비치)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이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 서식)
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23.7.6.>

이용료(제10조 관련)

구 분	기준	이 용 료
다목적 홀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다목적 실		
프로젝트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아리실(중)		
커뮤니티실	1회 이용 (2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원 ■ 1시간 초과 시 마다 20% 가산 ■ 평일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동아리실(소)		
감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반의 50퍼센트 감면 ■ 감면대상 중복 시, 1개 항목만 적용 	

【별표 2】 <제정 2023.7.6.>

이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환금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 3일 전부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 (제9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일 1일 전부터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이용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

이 용 시 설	. 기 본 시 설 : . 그 밖의 시 설 :
이 용 기 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회)
이 용 목 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해당 시)	첨부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p>「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의 시설 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p> <p>사 천 시 장 귀하</p>	

이용 승인 변경 신청서(제9조 관련)

변경 사유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이용일시		
	이용시설		
	부속설비		
	기 타		

년 월 일 귀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았으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사천시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단 체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주 소 :

사 천 시 장 귀하

이용 승인서(제9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이용시설																								
이용목적																								
이용 승인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이용료		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0 auto;"> <thead> <tr> <th style="width: 30%;">이 용 시 설 명</th> <th style="width: 20%;">이 용 료</th> <th style="width: 30%;">이용료 부과내역</th> <th style="width: 20%;">비 고</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이 용 시 설 명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이 용 시 설 명	이 용 료	이용료 부과내역	비 고																					
<p>「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이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제9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주 소			
신청 내용	이 용 시 설			
	이용 신청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불허가 사유				
<p>「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이용 승인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제14조제1호 관련)

번호	접수일자	이용시설명	이용자			이용시 일시	이용 목적	석상원 참여인	특별부대 설비개요	이용료	비고
			주소	성명	성별 남/여						

【별지 제8호서식】 <제정 2023.7.6.>

이용 승인대장(제14조제2호 관련)

결 재		승인 번호	승인 일시	접수 번호	이용 시설명	이용자			이용 일시	이용 목적	참석 예상 인원	특별 설비	부대 개요	비고
담당자	팀장					주 소	성명	성별 남/여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49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1. 당연직 위원: 주소정보 업무담당 부서장, 도로·문화·관광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공무원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나.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0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사천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 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 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자 준수사항)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파크골프장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연습사용 포함)하려는 때에는 허가를 받거나,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⑥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 ⑦ 시장은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⑧ 사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정관, 회원 명단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7. 사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파크골프장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상품판매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한 행위를 하는 사람

5. 시장이 지정한 파크골프장 안전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거부하는 사람

제6조(안전교육) ① 파크골프장 사용자는 이용전 반드시 시장이 지정한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방법은 현장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교육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파크골프장 사용시간은 09:00 ~ 17:00로 한다.

② 파크골프장은 잔디보호 및 시설점검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공휴일에는 휴관을 실시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시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거나 임시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8조(사용료 등)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시설 사용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단, 9홀 이하는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① 감면에 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별표2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으면 이미 사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크골프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파크골프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파크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이용시설의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파크골프장 개·보수 등 유지·관리와 손·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4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관리명목의 회원제로 운영하는 행위

제15조(감사 등) ①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경우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1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의 강화·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사천시를 관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조성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10.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스마트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 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2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사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6조(사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사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기관 단체를 말한다.

1.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3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
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4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사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거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횡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5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도서지역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사천시, 사천소방서, 사천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 소유의 선박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 지원대상은 선주에 한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유류대)(제5조제1항 관련)

1. 유류대: 유류소모량(리터) × 해당 월 유가

가. 유류소모량

유류 종류	산출기준
경유	소요시간 × 마력 × 0.118리터
휘발유	소요시간 × 마력 × 0.209리터
BA·BB유(중유)	소요시간 × 마력 × 0.106리터

나. 유가

- 1) 어선: 매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면세유가를 기준으로 한다.
- 2) 어선 외의 선박: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한국석유공사”라 한다)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 및 보통휘발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BA·BB유 등 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시하는 선박용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신설 2023.7.6.>

운항지원금 지급기준(인건비)(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지역별	소요시간 (왕복)	인건비 산정기준	비 고
주간 운항 (1회당)	사천시 도서지역	실제 선박이 왕복으로 운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한건설협회 고시 노임단가의 도서특별인부 기준 적용 (다만, 4시간 미만은 반일로 적용)	
야간 운항1) (1회당)			주간운항의 2배	

1) 해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 전까지의 시간에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7.6.>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				
이 송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선 박 명		선박규모	톤, 마력
	선박종류		사용유류	
환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병 원 명			
소 요 시 간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시간)		
상기와 같이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하였음을 확인함.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인계기관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div>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6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7조의2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 등)”을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로,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을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능력”으로,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를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게시대”를 “지정게시대 등”으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게시대 관리를”을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를”로, “관리 위탁지정신청서”를 “등 위탁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지정게시대”를 각각 “지정게시대 등”으로 한다.

④ 시장은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하며, 위탁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대 등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18조의 제목 “(현수막 게시기간 등)”을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재해”를 “시장은 재해”로, “게시기간”을 “표시기간”으로 한다.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행정 게시대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영 제8조제 3호에 따라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②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기간은 영 제29조에 따라 30일 이내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정 2023.7.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p>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p>	<p>개당 13만원</p> <p>개당 22만원</p> <p>개당 32만원</p> <p>개당 42만원</p> <p>개당 50만원</p> <p>개당 64만원</p> <p>개당 75만원</p> <p>개당 100만원</p> <p>개당 129만원</p> <p>개당 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개당 8만원</p> <p>개당 12만원</p> <p>개당 14만원</p> <p>개당 25만원</p>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개당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장당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p>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p>
<p>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20조제1항제1의3</p>	
<p>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p>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p>
<p>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p>		<p>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p>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p>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p>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8.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3.7.6.>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관리 위탁지정신청서(제17조의2제3항)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관리조례」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사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7.6.>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지정서(제17조의2제4항)

제 호		
수탁자	법인 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연 락 처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게시대 등(□ 현수막 □ 가로등 현수기) 관리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7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23. 7. 6.>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영업(소)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8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확산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연수·체험·홍보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59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 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기업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60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3. 7. 6.>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단위:원)

업종	구간(m ³)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2024년 7월 고지분부터	2025년 7월 고지분부터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m ³ 당	782	931	1,108	1,319
일반용	1~100	982	1,169	1,391	1,655
	101~300	1,437	1,710	2,035	2,422
	301이상	1,934	2,301	2,738	3,258
대중탕 용	1~500	837	996	1,185	1,410
	501~1,000	1,141	1,358	1,616	1,923
	1,001이상	1,489	1,772	2,109	2,510
산업용	m ³ 당	808	962	1,145	1,363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1961호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국내 여비 지급)”으로 하고,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고시 제2023-1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7. 6.

사 천 시 장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17 (2023.6.26.)	월등도항 부잔교 및 도교 설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10번지선	1,151 -직접: 78.5 -간접: 1072.5	2023.06.26.~ 2038.06.25.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고시 제2023-166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1. 세입·세출 결산

1. 결산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소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1,118,450,556,882	1,127,902,428,166	907,950,455,081	219,951,973,085	135,515,984,800 (580,000,000)	12,186,084,214	72,249,904,071
일반회계	1,047,130,709,952	1,055,779,149,915	860,961,249,388	194,817,900,527	130,392,501,110 (580,000,000)	12,066,986,470	52,358,412,947
특별회계	71,319,846,930	72,123,278,251	46,989,205,693	25,134,072,558	5,123,483,690	119,097,744	19,891,491,124
공 기 업 특별회계	39,193,046,690	39,099,712,300	31,868,123,302	7,231,588,998	1,867,701,270		5,363,887,728
기 타 특별회계	32,126,800,240	33,023,565,951	15,121,082,391	17,902,483,560	3,255,782,420	119,097,744	14,527,603,396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2.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합 계	1,001,142,835,000	1,141,664,665,595	1,127,902,428,166	1,692,247,330	12,069,990,099
일반회계	933,915,191,000	1,068,403,427,359	1,055,779,149,915	1,692,247,330	10,932,030,114
특별회계	67,227,644,000	73,261,238,236	72,123,278,251	0	1,137,959,985
공 기 업 특별회계	37,426,711,000	39,890,186,400	39,099,712,300		790,474,100
기 타 특별회계	29,800,933,000	33,371,051,836	33,023,565,951		347,485,885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118,450,556,882	907,950,455,081	136,095,984,800 (580,000,000)	14,138,067,554	60,266,049,447
일반회계	1,047,130,709,952	860,961,249,388	130,972,501,110 (580,000,000)	14,015,920,810	41,181,038,644
특별회계	71,319,846,930	46,989,205,693	5,123,483,690	122,146,744	19,085,010,803
공 기 업 특별회계	39,193,046,690	31,868,123,302	1,867,701,270		5,457,222,118
기 타 특별회계	32,126,800,240	15,121,082,391	3,255,782,420	122,146,744	13,627,788,685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II. 재무제표

1.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자산 ㉠	총부채 ㉡	순자산 ㉢=㉠-㉡	총비용 ㉣	총수익 ㉤	재정운영결과 ㉥=㉣-㉤
3,575,434,956,501	59,224,776,795	3,516,210,179,706	689,630,151,658	896,451,022,377	△206,820,870,719

2. 채권결산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발생액 ㉡	당해연도 소멸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합 계	5,635,648,557	4,582,736,189	2,669,275,664	7,549,109,082
일반회계	3,567,738,057	2,832,421,590	828,667,900	5,571,491,747
특별회계	2,067,910,500	1,750,314,599	1,840,607,764	1,977,617,335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채무결산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㉒	당해연도말 현재액 ㉓=㉑+㉒
계	30,700,000,000	△8,568,750,000	22,131,250,000
일반회계	15,000,000,000	△468,750,000	14,531,250,000
특별회계	15,700,000,000	△8,100,000,000	7,600,000,000

III. 기금결산

(단위: 원)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㉓=㉑+㉒
	계 ㉒=㉑-㉔	조 성 액 ㉑	사 용 액 ㉒	
10,237,856,876	35,415,645,742	36,898,196,105	1,482,550,363	45,653,502,618

IV.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1. 공유재산결산

(단위: 원)

전년도말 현재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㉓=㉑+㉒
	계 ㉒=㉑-㉔	증 가 액 ㉑	감 소 액 ㉒	
1,777,547,432,589	378,005,984,695	454,152,177,697	76,146,193,002	2,155,553,417,284

2. 물품결산

(단위: 원)

전년도말 현재액 ㉑	당해연도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액 ㉓=㉑+㉒
	계 ㉒=㉑-㉔	취 득 ㉑	처 분 ㉒	
13,767,062,300	527,135,470	907,319,470	380,184,000	14,294,197,770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V. 성과보고서

(단위: 개)

구 분	성과목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11	66	218	21	168	29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공고 제2023-968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조례의 지원대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취학아동의 실제 입학학교(타 시도·시군 소재)와 상관없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 나. 별지 서식(신청서) 보완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 (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16,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번호: 055-831-2597, 팩스번호: 055-831-6063)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 조례의 지원대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취학아동의 실제 입학학교(타 시도·시군 소재)와 상관없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별지 서식(신청서) 보완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 ~ 2023. 7. .(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두고 시에 있는”을 “두고”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사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 일 기준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 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을 <u>두고</u> <u>시에 있는</u>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 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 ③ (생 략)</p>	<p>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① ----- ----- ----- ----- <u>두고</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관 련 법 규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공고 제2023-969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단독주택 등에만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 (안 제7조제4항)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역경제과,

전화: 831-3065, FAX: 831-6031)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 .
제 출 자: 지역경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재 단독주택 등에만 지원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 (안 제7조 제4항)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법」 「소상공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 . ~ 2023. . . (20일)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가스공급계획에 공급의무가 반영된 경우 외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공고 제2023-977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남부 종로1-12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공사차량을 제외한 차량	구간	사천시 벌리동 494-9 ~ 사천시 벌리동 494-10
기간	2023년 7월 10일(월)~11일(화), 7월 17일(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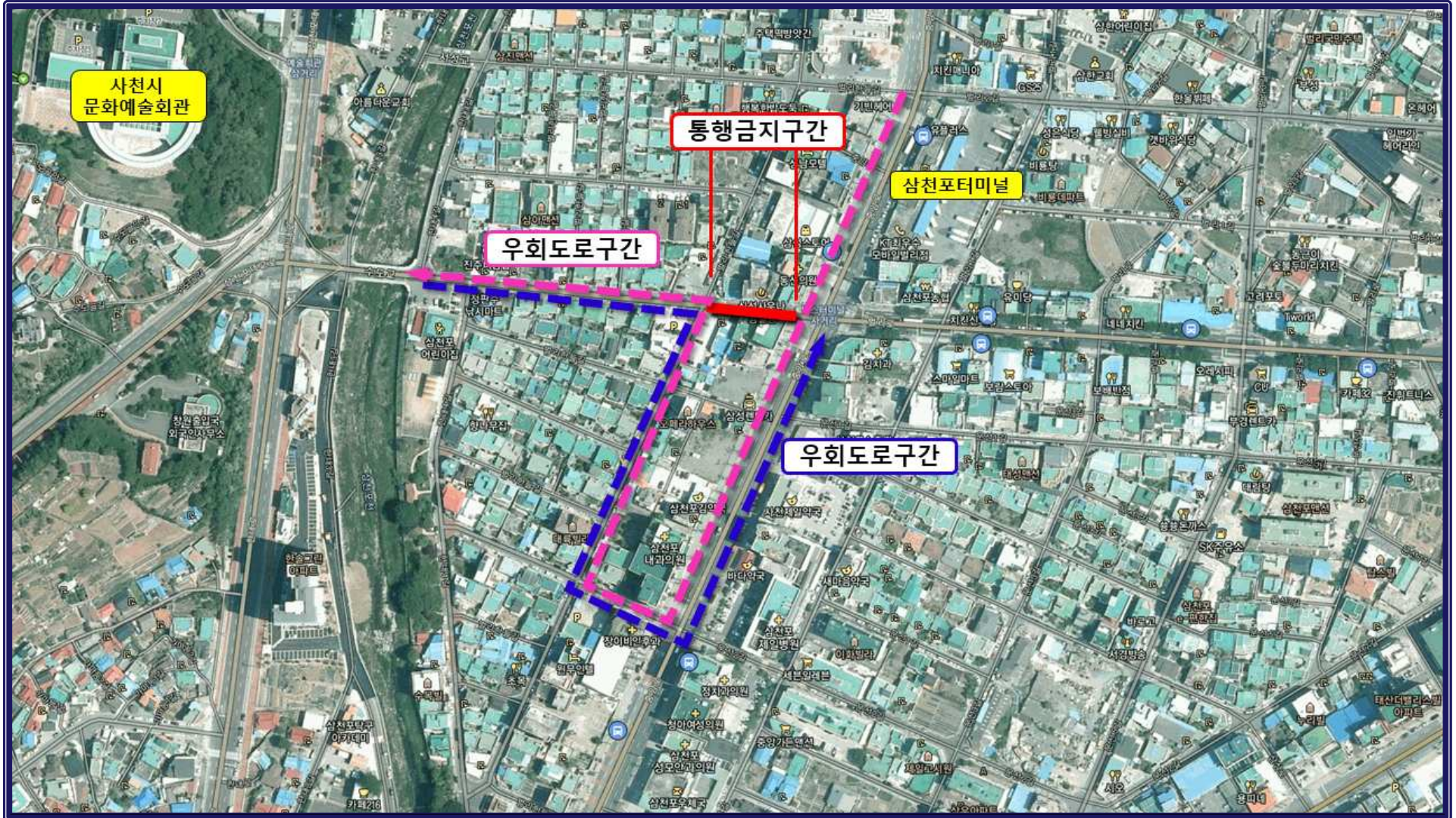
수도교~벌리신호등간 도시계획도로(종로1-12호선) 개설공사를 위하여 추진 중인 건축물 해체공사(벌리동 495-8번지)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그 밖의 사항

사천시 벌리동 495-8번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우회하여 통행.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통행금지구간 및 우회도로 위치도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공고 제2023-983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78, FAX: 831-6035)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건설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폐지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되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6. . ~ 2023. 7. 26.(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사천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25조(환지계획)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④ 환지계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 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용
2. 종전 토지 및 시행 후 토지의 필지별 내용
3.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그 밖에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 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비농경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토지 소유자별로 증감 폭이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1천제곱미터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⑦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溝渠: 도랑), 도로, 하천, 제방(둑) 또는 유지(웅덩이)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에게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이 있는 경우 종전 토지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① 환지 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며, 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할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권리는 그 고시가 있는 날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에 따라 해당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다음 날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에 따라 교환된 토지는 해당 환지계획에 따라 교부된 환지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원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⑥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제40조에 따른 수혜자총회의 의결(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체납처분을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면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일시 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통지된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전의 토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일시 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일시 이용지에 대하여 제2항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개시일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 이용지를 사용하거나 일시 이용지에서 수익하지 못한다.

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를 지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⑦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7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종전 토지의 가격 평정(評定)은 공사 시작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 평정은 공사 완료 후에 조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2. 11.>

제40조(수혜자총회) ① 종전의 토지 및 사업시행 후 토지의 평정 가격, 등급 결정, 환지 구역 분할 등과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해당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수혜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로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수혜자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의 수는 최소 30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수혜자 2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 수혜자총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공고 제2023-984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세입 및 세출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다. 자금 전출 근거 마련(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62,

FAX : 831-6911)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7. .

제 출 자: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 수질개선 특별회계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세입 및 세출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다. 자금 전출 근거 마련(안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30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7. 6. ~ 2023. 7. 26.(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3년”을 “2028년”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출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제7조의 제목 “(자금의 전용금지)”를 “(자금의 전출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전용”을 “전출”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 (존속기한) ----- ----- <u>2028년</u> ----- -. ----- ----- ----- -----.</p>
<p>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u>다음 각호와 같다.</u></p>	<p>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u>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p>
<p>1. <u>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용자금</u></p>	<p><삭 제></p>
<p>2. <u>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용자금</u></p>	<p><삭 제></p>
<p>3. <u>지방양여금</u></p>	<p><삭 제></p>
<p>4. <u>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금</u></p>	<p><삭 제></p>
<p>5. <u>도 보조금</u></p>	<p><삭 제></p>
<p>6. <u>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u></p>	<p><삭 제></p>
<p>7. <u>차입금 및 수익금</u></p>	<p><삭 제></p>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u>다음 각호와 같다.</u></p>	<p>제4조(세출) ----- <u>각 호</u>-----.</p>
<p>1. 「<u>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u></p>	<p>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출</p>

<u>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인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u>	
<u>2. 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시설 또는 녹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u>	<u><삭 제></u>
<u>3. 법 제17조에 의한 오염총량관리</u> <u>에 필요한 비용</u>	<u><삭 제></u>
<u>4. 법 제22조에 의한 산업단지등의 폐수 재이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u> <u>용</u>	<u><삭 제></u>
<u>5. 법 제23조에 의한주민지원사업</u> <u>에 소요되는 비용</u>	<u><삭 제></u>
<u>6. 법 제25조에 의한 수질오염방지</u> <u>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u>	<u><삭 제></u>
<u>7.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환</u> <u>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u> <u>요되는 비용</u>	<u><삭 제></u>
<u>8. 법 제39조에 의한 수질보전 및</u> <u>감시활동의 지원 비용</u>	<u><삭 제></u>
<u>9.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u> <u>원 비용</u>	<u><삭 제></u>
<u>10. 법 제18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u> <u>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u> <u>산업단지에 설치된 완충저류시</u> <u>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u>	<u><삭 제></u>
<u>11.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u>	<u><삭 제></u>

에 소요되는 비용

12.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13. 댐의 저수를 광역상수도로 공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비용

<삭 제>

14. 수원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15.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삭 제>

16.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17.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0.11.5.>

<삭 제>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
----- 전출-----
-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